



www.seoul.go.kr
제 3242호
2014. 7. 14.(월)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5739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5740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5

자 치 법 규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5739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4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으며, 그 위원정수는 13명 이내로 한다. 다만, 원구성시 최소 위원정수는 9명 이상으로 한다.

1. 운영위원회
2. 행정자치위원회
3. 기획경제위원회
4. 환경수자원위원회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6. 보건복지위원회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9. 교통위원회
10. 교육위원회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다.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시장비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정무부시장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 가.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교육협력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바. 비상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사. 정보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아. 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자.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사항
- 차. 지방경찰청 업무 중 시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획경제위원회

- 가.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경제진흥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농수산식품공사에 관한 사항
- 라. 서울연구원에 관한 사항
- 마. 서울산업진흥원에 관한 사항
- 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관한 사항
- 사. 서울시립대학교에 관한 사항

4. 환경수자원위원회

- 가. 기후환경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푸른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한강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대변인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시민소통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세종문화회관에 관한 사항
- 마. 서울문화재단에 관한 사항
- 바. 서울시립교향악단에 관한 사항
- 사.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업무 중 시의 출자 등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
- 아. 서울디자인재단에 관한 사항
- 자. 교통방송에 관한 사항

6. 보건복지위원회

- 가. 복지건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서울의료원에 관한 사항
- 라. 서울복지재단에 관한 사항
- 마. 여성가족재단에 관한 사항

7.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가. 도시안전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소방재단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 중 시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8.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가. 도시계획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주택정책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마곡사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에스에이치(SH)공사에 관한 사항

9. 교통위원회

- 가. 도시교통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 중 도시철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서울메트로에 관한 사항
- 라. 도시철도공사에 관한 사항
- 마.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

10. 교육위원회

-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현행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설치 근거법령(「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17조)의 일몰기한이 도래되어 의원정수가 114명에서 106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위원정수를 조정하고자 함.

나. 또한, 일부 상임위 소관 배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국별 기능과 업무간 유사성을 기준으로 각 상임위별 소관 부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부 소관 부서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 상임위별 위원정수를 13명 이내(단, 원구성시 최소 위원정수는 9명 이상)로 하되, 상임위원회 수를 10개로 함(안 제32조).

나. “교육협력국”과 “정보기획단”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함(안 제33조제1항제2호).

다. “재정경제위원회”를 “기획경제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함(안 제33조제1항제3호).

라. “교통방송”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함(안 제33조제1항제5호).

마.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신설하고, “도시안전실”,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중 시설국”, “기술심사담당관”을 그 소관으로 함(안 제33조제1항제7호).

바. “도시기반시설본부 중 도시철도국”, “시설관리공단”을 교통위원회로 변경함(안 제33조제1항제9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5740호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4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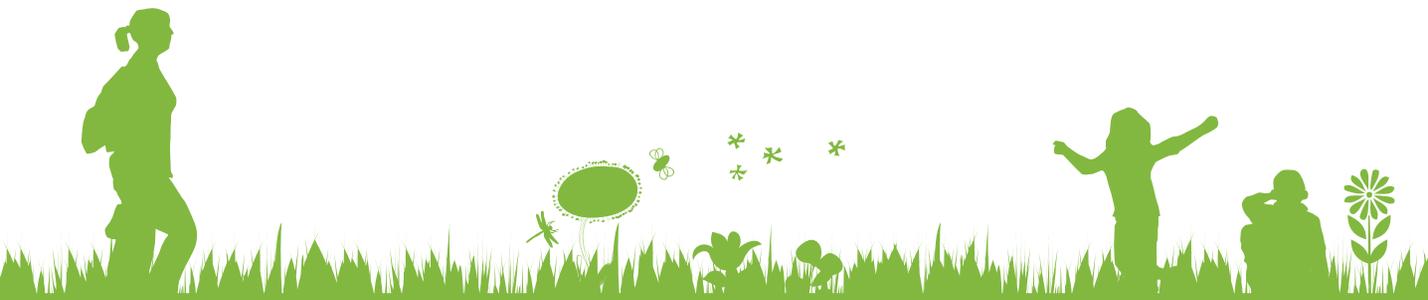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의 규정이 201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바, 이를 사무처 설치 조례에 반영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삭제하도록 함 (안 제6조).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